

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2529호

2026년 6월 30일 (화)

차 례

훈령 · 예규

- 파주시 훈령 제324호 파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1

고시 · 공고

- 파주시 고시 제2026-270호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3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32
- 파주시 고시 제2026-271호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4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34

회 람									
--------	--	--	--	--	--	--	--	--	--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파 주 시 장 김 경 일 인

2026년 6월 30일

파주시 훈령 제324호

파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

파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의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동을 말한다.

2.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3.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2호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사람

4. “현업업무 종사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1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일반 행정 업무와는 업무 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법 규정과 관련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① 시장은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조직 구성) ① 시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전담조직) ①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하 “안전·보건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수립
3.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 담당 실·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본청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시장은 관계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관계수급인 공사 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종사자가 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과 제2항의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소속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의 담당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3조의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2조의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보건의) ① 시장은 종사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산업보건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작업지휘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
2. 향타기나 향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사자 위원”이라 한다)과 시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종사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종사자 위원

가. 종사자 대표

나. 종사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2. 사용자 위원

가. 관리책임자

나.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

다. 공공노무 업무 담당 팀장

라. 안전관리자

마. 보건관리자

② 종사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종사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종사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 심의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진술 또는 조언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활동보장 및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
2. 정당한 위원회 활동에 따른 불이익 금지
3. 종사자 위원 선출의 개입 및 방해 금지

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 사항의 집행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안건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3조(회의 결과의 공지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과 종사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 교육

제24조(교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안전 및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정기교육) 시장은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2. 공공행정업 종사자: 현업업무 종사자 반기 12시간 이상
3. 공공행정업 외 종사자: 사무직 반기 6시간, 비사무직 반기 12시간 이상

제26조(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시장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직,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3. 그 밖의 종사자: 8시간 이상

② 시장은 작업 내용이 변경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직,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2. 그 밖의 종사자: 2시간 이상

제27조(특별교육) ① 시장은 종사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 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직,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하: 2시간 이상
2. 그 밖의 종사자: 16시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시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
급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종사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제25조에 따른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직무교육 및 전문화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③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전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전담조직 소속 직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

제30조(안전보건교육 강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 및 내용

3. 교육담당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내용 등) ①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른다.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33조(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각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시장은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방호조치를 한 후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검사) ① 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기준에 맞는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 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안전인증) 시장은 종사자가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가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안전·보건 수칙) ① 시장은 해당 사업장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수칙을 작성하여 종사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안전·보건 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보건 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보건 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8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시장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한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9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관리감독자 등에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사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한 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또는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출입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종사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등은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작업중지) ①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종사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업장의 보건관리

제43조(건강진단) ① 시장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시장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2. 보호구 착용
3. 관계인 외의 사람 출입 금지
4. 물질안전보건자료 부착 및 게시

제46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종사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종사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훔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훔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역작업: 방한모 · 방한복 · 방한화 · 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 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호구의 지급 주기를 정하고, 종사자가 수령한 장비를 보호구 지급 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과주시 안전보건 보호구 적격품 선정 지침」에 따른다.

제47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시장은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및 제658조에 따라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대표 또는 해당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질병자 근로 금지·제한)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과주시 화학물질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50조(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조치)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시장은 종사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폭염·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등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562조 및 제56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작업 시 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항에 따라 종사자가 직사광선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또는 휴게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파작업 시에는 방한용 보호구 지급, 보온장소 제공 등 한랭질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폭염·한파 시 세부적인 작업 기준, 예방조치 및 대응 절차는 「과주시 폭염 및 한파 작업 지침」에 따른다.

제53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종사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8조의2에 따라 종사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5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종사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과 실시 결과를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교육,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과주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험

성평가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주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안전보건정보
2.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도급 사업 안전 및 보건 조치

제58조(도급·용역·위탁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시장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도급·용역·위탁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시장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종사자가 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및 순회 점검
3. 안전·보건 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4.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가. 발파작업

나.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6. 위생시설 제공

② 시장은 도급·용역·위탁 등의 사업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기준 명시
3.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명시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과주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0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수급인 등에 대한 시정조치) 시장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종사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대표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2조(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종사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사고 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3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① 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감독자 등은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와 3일 미만의 휴업재해를 포함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지체 없이 산업재해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시장은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거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반기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5조(기록 및 관리) 시장은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10장 보칙

제66조(소통창구 운영) ① 시장은 사업장의 종사자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사자의 의견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안제도 및 의견청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주시 종사자 의견청취 지침」에 따른다.

제67조(포상 및 징계) ① 시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추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부서, 기관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훈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과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안전·보건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 및 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각종 사고나 재해의 발생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공표 등 시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68조(문서기록·보존) ① 시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서류는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규정의 준수 등) ① 시장 및 모든 종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규정을 각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규정은 시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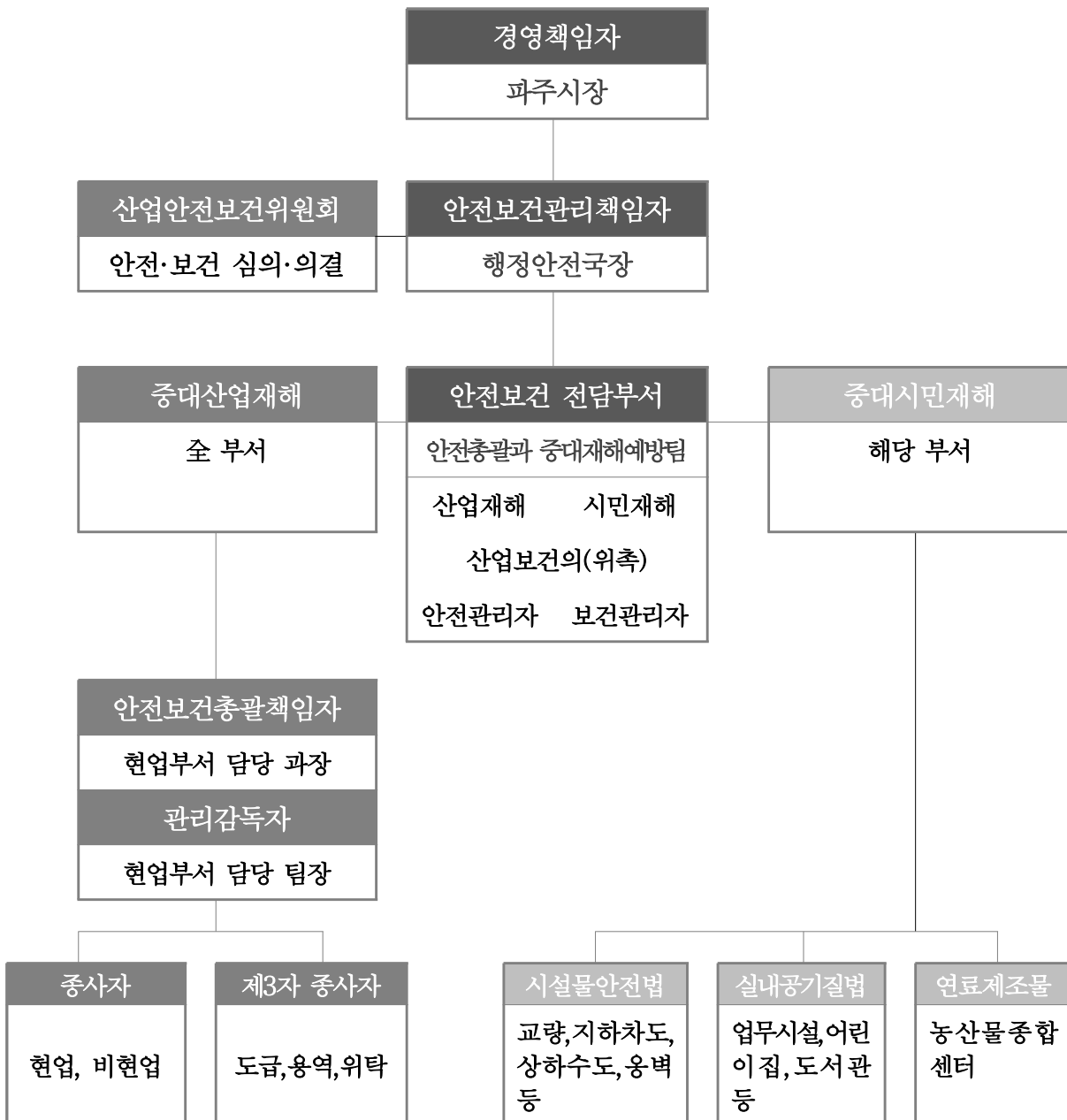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및 결정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8676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중대재해예방 팀 장	최 성 덕
	담 당 자	박 준 민

[별표]

파주시 안전·보건 관리 조직(제7조 관련)



□ 개정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와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도급사업시의 안전 및 보건 조치 확보 의무를 반영하여 파주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이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제6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3조)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4조~제32조)
-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제42조)
- 사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제54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55조~제57조)
- 도급사업 시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58조~제61조)
-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62조~제65조)
- 소통창구 운영 및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제66조~제69조)

파주시 고시 제2026-270호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3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넥스트건설(대표 조애란)이 신청한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3블럭 상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30.

파 주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3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넥스트건설(대표 조애란)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3블럭

라. 사업내역

구 분	승인 내용	비고
대지면적(㎡)	20,759	
건축면적(㎡)	8,666.1118	
연 면 적(㎡)	109,851.6138	
층 수	지하4층~지상46층	
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동 수	공동주택 4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세 대 수	472세대	
사 업 기 간	2026. 8. 31. ~ 2030. 5. 31.	

마. 세대 및 실당 규모 사업내역

형별구분 (공동주택)	공급면적(m ²)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60형	60.9995	22.0337	83.0332	70
84A형	84.9594	27.4805	112.4399	108
84B형	84.4998	29.7097	114.2095	86
88형	88.5023	28.3257	116.8280	129
115형	115.3141	36.1923	151.5064	79
합계	41,239.1736	13,578.5108	54,817.6844	472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m ²)				토지소유자
			계(m ²)	주택부지(m ²)	도로부지(m ²)	제외부지(m ²)	
계			20,759	20,759	0	0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3블럭	대	20,759	20,759	0	0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4. 기타: 관계도서는 과주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파주시 고시 제2026-271호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4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넥스트건설(대표 조애란)이 신청한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4블럭 상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30.

파 주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4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넥스트건설(대표 조애란)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4블럭

라. 사업내역

구 분	승인 내용	비고
대지면적(㎡)	19,277	
건축면적(㎡)	8161.9855	
연 면 적(㎡)	102,242.4905	
층 수	지하4층~지상43층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동 수	공동주택 4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세 대 수	472세대	
사 업 기 간	2026. 8. 31. ~ 2030. 5. 31.	

마. 세대 및 실당 규모 사업내역

형별구분 (공동주택)	공급면적(m ²)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60형	60.9995	23.8228	84.8223	156
84형	84.9594	29.9723	114.9317	316
합계	36.363.0924	13,187.6285	49,550.7209	472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m ²)				토지소유자
			계(m ²)	주택부지(m ²)	도로부지(m ²)	제외부지(m ²)	
계			19,277	19,277	0	0	
운정신도시 3지구	주상복합 4블럭	대	19,277	19,277	0	0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4. 기타: 관계도서는 과주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